

제 102

행 정 명 령

법률 및 법규의 특정 조항의 정지 또는 수정의 지속

본인은 2012년 10월 26일에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발령하였습니다;

행정법 제29-a조는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법칙 또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이를 정지, 변경 및 수정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12년 10월 31일에 교통 인프라 복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50호를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2012년 11월 20일에 주 계약 및 주 시설물 수리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79호를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Sullivan, Ulster, Westchester 카운티에 행정명령 제47호에 의해 선포된 재난 비상사태의 선포를 90일 동안 지속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98호를 2013년 4월 24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행정명령 제98호, 제97호, 제91호, 제87호와 제 81호가 지속됨에 따라 행정명령 제50호와 제79호에서 명령한 특정 법률 조항 정지 및 수정을 지속하는 행정명령 제100호를 2013년 3월 24일에 발령했습니다

행정법 제29-a조에는 법률의 정지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모든 관련 사실 및 형편을 재고려하여 정지를 추가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CUOMO** 뉴욕주지사는 행정법 제2-B조의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재고려한 후에 행정명령 제 100호로 연장된

행정명령 제 50호와 제 79 호에 의해 명령된 법규 조항의 정지 및 수정은 2013년 7월 23일까지 지속됩니다; 행정 명령 제 50호의 지속은 2013년 6월 23일까지 유효합니다.

2013년 6월 28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